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27.(월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정책과
담당과장	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김범수 사무관(044-203-5362)

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12.28(화) 국무회의 통과

-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(`22년 12.5% → `26년 25%)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**하는 내용의 **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**(이하 '신재생에너지법') **시행령 개정안**이 **'21.12.28(화) 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(공포 후 즉시 시행) 되었다고 밝힘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'21.4월 **신재생법률을 개정**하여 **신재생 의무공급비율**의 **상한**을 **10%**에서 **25%**로 **상향**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,

○ **「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」** 및 **「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**(NDC) **상향」**('21.10월 탄중위)에 따라 **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**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
○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**'22년에는 당초 10%에서 12.5%**로 상향하고, **'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%**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

<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(시행령 별표3) >

연 도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의무공급비율	(기존)	10.0%	----------			
	(개정)	**12.5%**	**14.5%**	**17.0%**	**20.5%**	**25.0%**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**공급의무자***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,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**의무공급비율 상향**에 **이견이 없었음**

* '21년 23개사 /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(시행령 제18조의3)

○ 또한, **입법예고**('10.6~11.1)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, **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**을 위해 '신재생에너지 **지속 확대 필요' 의견이 대다수**를 차지하였음

*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: 총 232건(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건, 신재생 확대·지원 요청 등 47건, 반대 2건 등)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**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**을 산정하여 **'22년 1월**중 **공고**할 계획임

○ 한편,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**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**태양광 고효율화, 풍력 대형화** 등 **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**를 추진함으로써 **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**해 나갈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김범수 사무관(☎ 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